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9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4. 25(금) 14:00~17:28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인사소통팀 이재륜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체 위원 11인 중에서 9인이 이 자리에, 그리고 2인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작품제작지원단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제작지원단 지원대상 결정의 건, 보수규정 개정(안),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운영주관처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심의에 대한 비상임위원 참여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7건과 보고안건 6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3월 28일에 개최한 제393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되어 6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4월 10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94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거요?

장미진 위원 : 그때 노조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로 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노조?

장미진 위원 : 2월 회의에서 노조위원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3월 회의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4월 회의 때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예. 2월에 노조에서 성명을 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미진 위원 : 위원들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조심해 달라”고 경고를 받았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직후에 노조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노조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항의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회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다 듣고 있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미진 위원 : 노조위원장은 이미 사퇴를 한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임기가 끝났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렇게만 해명하고 그냥 간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미진 위원 : 그때 다른 분들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발언을 했어요. 언행을 조심하라는 식의 경고 발언이었거든요. 직원들이 듣고 항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만 무마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 달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충분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논의를 해서요.

장미진 위원 : 어떤 처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언행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항의정보다는 “회의를 전 직원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어떤 항의라든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게 하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장미진 위원 : 그래서 3월 회의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노조위원장이 “사과로 받아들여졌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발언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위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의 표현이었는데요. 그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다고요? 좀 그렇지 않나요?

정병국 위원장 : 해프닝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장미진 위원 :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자기한테 그런 메시지가 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괜한 오해가, 그러니까 회의진행상황도 아닌데 잘못 전달이 되면, 회의가 아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장미진 위원 : 저 같은 경우에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 과장님한테 보낸 문자 때문에 “노조에 고발하겠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죠.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라서 그 문자를 언제든지 공개할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냥 별게 아니었다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글썄요. 제가 있었을 때 상황이 아니라서요.

장미진 위원 : 그러면 그때 진행을 해 주셨던 정갑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갑영 위원 :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반말 같은 게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반말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정식회의가 아니고 쉬는 시간에.

장미진 위원 : 그런 경우라면 살며시 와서 위원한테 조심하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이크를 꺼줘도 될 일을 마이크를 켜시고 그렇게 경고하듯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어요. 위원들이 별말 안 해도 위압감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멘탈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임기가 다 되어서 가시고 후임은 없으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후임으로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계시지 않아요? 저는 정식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얘기가 되었길래 그런 경고를 받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정갑영 위원 : 그런데 그때 내 기억으로 경고는 아니었어요.

장미진 위원 : 위원님은 느낌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정갑영 위원 : 나는 모르겠지만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우리나라 현재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말을 만약에 했다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켜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켜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죠.

정병국 위원장 : 본인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치선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왕치선 위원 :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쉬는 시간에 노조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고, 누군가가 노조위원장에게 그 문제를 항의했다고 했는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본인이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나와서 이것을 찾아라 말아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직원들이 그런 식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는 누가 이 부분을 방어해 주나요? 위원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나서서 중재를 해주거나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다음부터는 발언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옆에 계셨던 위원님들과 “나였어?”, “너였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이런 경험을 처음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기록을 좀 볼 수 있냐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실은 여의치가 않고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안 계셨고 위원장님 대행이셨던 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까 대행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그 부분은 “네가 그렇게 느껴라.” 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별게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길어질 필요는 없고요.

왕치선 위원 : 별게 아닌 것은 아니죠. 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압적인 내용이 점점 생기는데요.

정갑영 위원 : 이것은 누구를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반말을 했느냐부터 검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반말을 해서 반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이것 자체는 팩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는데 왜 네가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반말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느껴서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미진 위원 : 어떤 게 그렇게 느꼈는지?

정갑영 위원 : 그러면 다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장미진 위원 : 검증이 아니라 노조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송시경 사무처장 : 죄송합니다. 노동조합하고 사무처장과의 포지션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무처가 예술위원회 전체를 보조하는 입장이라서 향후 사무처의 입장으로는 제가 잘 수렴해서 바로바로 이런 의사표현이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을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회의의 참관인으로 노조위원장이 참여한 것은 그 당시 개인의 입장에서 참석한 게 아니고 사무처 직원을 대표해서 참석했고 노조위원장이 쉬는 시간에 켜져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담을 하는 내용들이 나가면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무슨 소리든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이 돼서 “어떻게 반말을 하나?”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항의성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분히 장미진 위원님이나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는 입장에서 불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노조위원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고요. 제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회의 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잊어버린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노조위원장의 얘기를 듣고는 노조위원장의 어감이나 목소리가 노조를 하시는 분들의 말투가, 늘 노사 간에 얘기할 때도 보면 굉장히 사무적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대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이것을 위압적으로 느끼셨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비록 우리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발언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신 것을 보면 저는 별 근거 없이 저희를 겁박했다고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27호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지역소멸, 인구소멸의 이슈 등을 고민하고 예술적 담론과 실천을 생산하여 국제문화예술계로 공론화 하고 확산하고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4년 교류협력팀에서 진행했던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과 선정지역에 대한 후속 연계를 통해서 국내 예술단체들의 국제예술교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회성 혹은 연례적 축제, 컨퍼런스 행사가 아니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이슈를 국내외 파

트너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주로 추진하고 국제적 예술 담론으로 풀어내어 발굴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확산하는 중장기적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1건에 1억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로 진행했고 총 5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의 적격자를 지정해서 다원예술, 연극, 무용으로 꾸렸고요.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 지역소멸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2024년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평가위원단 중 5인이 계셨는데요. 감사실의 입회하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2인을 선정해서 총 5인으로 꾸려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로 진행을 했고요. 모두 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심의기준에서 보시면 일전에 위원회 회의 때 과정 중심의 R&D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효과 부분의 가중치를 높였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기대효과를 40%로 올려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의를 하실 때 결국은 이 사업이 갖게 되는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셨습니다.

접수결과는 총 10건이었습니다. 다년과 단년을 다 열었는데요. 총 10개의 사업이 다 다년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중에서 행정결격 4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 강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예비후보를 뽑았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4월 28일 월요일에 결과를 공지하고 5월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여기에 보니까 10건 중에서 4건이 행정실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탈락인 것인지? 서류만으로 해서 4건인데 40%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역량이 국제네트워킹 라든지 정성적인 역량이 주된 심의대상인데요. 100건 중에서 4건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10건 중에 4건이라고 하면 실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다시 심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흥행률에서 실패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많고 그 가운데에서 뽑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게다가 1건당 규모도 적은 규모가 아닌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어도 10건 중에 4건 정도의 실패율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 자체가 제한적 공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모를 그냥 사이트에 올려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이 아닌 데에서 응모를 해서 자동실격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한공모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소멸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서 그 사업을 수행한 지역에 한해서 1년 동안 사업했던 내용들을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한 경우는 자동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열린 플랫폼을 통해서 공모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을 통해서 통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반영해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지금 보면 취지가 명확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격요건이나 이 취지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1건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결격이 4건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결격이 있다는 것은 공모에 나와 있는 공모안을 꼼꼼하게 보지 못 했거나 저희가 디테일하게 공모안을 내지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4건인 것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해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리고 공모안에 최대한 많이 담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향후에는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28호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작품제작지원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안건은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작품제작지원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19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술도약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5년 1월에 기본계획(안)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2월 말에 공모사업 추진계획 의결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작품을 제작·지원할 수 있는 주관처 선정을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NCAS로 접수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 약 3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작품 개발 지원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단체별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역량을 높이며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이러한 해당 내용의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협·단체로서 지원신청하는 단체 명의로 5년 이상의 운영 이력을 보유하고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2회 이상인 협·단체를 자격제한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작품제작지원단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그래도 50% 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정단체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어떤 부분의 내용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관련된 전문가문단 구성이나 관련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5억 원이고 1개 주관처 선정으로 지금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5건의 신청접수가 들어왔고 심의위원 명단은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해서 연극과 뮤지컬 2인을 반영했고요. 장르별로 심의위원을 반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심의기준은 크게 계획 자체가 잘 짜여 있는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단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 3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했고 해당 5개 단체에 대해서 모두 신청대상자 인터뷰 심사를 했고 심의위원별로 개별채점과 채점결

과로 지원대상을 결정했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들어온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가 모든 심의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예비로 2개 단체를 뽑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4월 28일 발표를 하고 이후에 선정된 단체, 지역재단으로부터 추천한 단체들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단체들이 선정되면 바로 작품제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심의 기준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심의도 하고 공모에 제안서도 쓰지만 심의 하는 사람들이 늘 똑같지 않다고 하면 심의 기준을 보면 새로운 것일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 내용들을 보시면 ‘긍정적이나?’, ‘기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 기준을 설정하실 때,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주실 때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뭔지를 강조하셔야 금방 눈에 들어와서 어떤 심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되거든요. 판단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실 때 심의 기준을 심의위원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지를 여쭙보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기준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계획과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의 역량을 갖춘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위원님들과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교감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품제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단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품제작을 지원할 것인가? 그들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계속 관리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잘하는 업체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참여 전문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행사성 이벤트보다는 작품제작지원 쪽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을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구문모 위원 :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발언을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아주 적절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 발언은 심의할 때 똑같은 발언이어야 하거든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심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것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심의에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작품제작지원이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내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훈경 위원 : 신규사업이라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심의총평에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단순한 중간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진부

터 중견까지 다층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감사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29호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제작지원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시각도 앞서 공연부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선정된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제작지원단을 통해서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지원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 원 내외로 공고를 하였고요. 총 7건이 접수되었고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전담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라는 단체가 선정되었는데요. 선정 당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제작지원단의 역할이 전시를 희망하거나 혹은 출판을 희망하는 작가분들이 본인의 작업에만 집중하도록 제작지원단이 전시장소 섭외부터 전문 큐레이터를 섭외해서 매칭해 주고 제작된 프로젝트들이 대외에 홍보가 되고 프로모션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 ‘○○○○’이 굉장히 시각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자 풀과 연구진의 풀을 제안하면서 작가 1명당 1인의 기획자 그리고 1인의 연구자를 러닝메이트로 매칭해서 전문적인 작가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고 홍보 부분까지 실행하겠다는 지점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34분 성기숙 위원 온라인 입장)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려서 죄송한데요. 생각이 나서요.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실 건 하셔야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거죠.

구문모 위원 :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문예위에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홍행률이 좀 낮다.” 그래서 심의건수가 탈락률도 그렇겠지만 홍행률에 있어서 높였으면 하는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이나 “문제점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금액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데 50건이 왔다고 하면 홍행대박이죠. 이랬을 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적으면 “계속해야 되나?” 라는 궁금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선정률이 15% 안팎이거든요. 85%가 엄청난 행정적 낭

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가 보면서 우스운 게 7건이 들어왔는데 시각예술인데 ‘○○○○○○○○’가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엄청난 서류를 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시간낭비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선정률이 낮다.”, “응모해 봐야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액 다건을 배제하고 다액, 단계적, 다년으로 하면서 과거에 하던 것들을 다 지역문화재단으로 넘기면서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의례 뭐가 있으면 갖다가 넣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여기가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교차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훈경 위원 : 지원율이 높으면 좋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연이나 작품을 제작하는 지원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많아서 선정률이 오히려 낮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이것은 작품이나 공연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 관리해 주고 성과관리나 기타 등등을 해 주기 위한 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좋은 단체가 들어와서 성과관리나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율이 높다고 결코 좋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배은주 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지원을, 신청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심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지원율을 낮추고 선정률을 높일 것인가? 신청률을 높이고 선정률을 낮출 것인가? 통계와 수치의 문제는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은 많이 되었는데 선정률이 적으니까 그만큼 민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해 보니까 서류미비나 자격요건에서 걸러지는 부분도 많아요. 거기에서 1차 필터링이 되면 지원율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모(안)에 저희가 조금 허들을 높여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한테 오는 페이지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단체들이나 예술가만 올 수 있게 해도 신청률은 조금 낮아지고 선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약간은 조정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탈락률이 너무나 높아지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공모(안)을 할 때 저희가 깊게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바꾸고 성격도 바뀌어서 체질개선을 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진행하고 추가공모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지점이라서 공모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올해 말 정도에는 이렇게 체질개선을 했을 때 지원율이나 선정률 등 정량적인 것을 포함해서 정성적인 부분까지 함께 해서 자체적인 분석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현장업무보고를 하는데 현장업무보고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할 것들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현장업무보고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30호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영 인사소통팀장이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금번 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통팀에서 주관하는 보고안건은 총 2가지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안)과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으로 관련해서 2가지 안전에 대한 개요 먼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임금인상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률을 발표함과 동시에 각 공공기관들에게 하달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직원의 경우에는 총 인건비 보수 내에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원 및 사무처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기재부에서 별도 통보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다 보수규정, 기본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전체회의 의결 전에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금번 보고를 드림을 먼저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먼저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녀 부양가족 수당에 대한 인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출생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반영해서 공무원 수당의 인상분을 그대로 공공기관에 반영하고자, 사전 통보를 문체부로부터 4월에 받았습시다. 원래 연초부터 시행했던 건이기는 하지만 문체부에서 통보가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금번 4월에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 부분이 금번에 개정되게 된다면 4월부터 시행이지만 1월부터 소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초임연봉 상승분입니다.

초임연봉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초임연봉을, 정부임금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직급승진을 한 직원과 다음 해 직급승진을 한 인원의 임금 편차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직급승진이라는 부분은 임금에 대한 가장 큰 영향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없음을 검토해서 문체부에서 최종 확정된 부분은 임금인상률의 절반인 1.5%를 각 직급별 초임에 반영하되 7급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고려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의 반영을 위해서 보수규정 개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지금 파주 벽제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접속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다시피 오늘 4월 25일 전체회의 날짜와 공연예술창작산실 전담심의 날짜가 겹쳤고요. 약간의 사무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날짜 조정을 요청드렸는데 여의치 않게 되었고요. 줌으로 1시간 정도, 지금 공연준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요청을 했고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절충해서 회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총괄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위원장, 감사, 사무처장만 정부에서 예산집행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기본연봉 2.7% 인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문예위의 본부장급 이하 팀장, 과장, 차장, 대리의 인상도 2.7% 동일하게 인상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 감사, 사무처장만 정부지침의 기본연봉인 2.7%가 해당되는 것인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2025년도 정부임금인상률은 3.0%고요. 3.0%는 전 직원에게 반영되는 부분이고 임원 및 사무처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 중에서 2.7%로 2개가 상이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감사님, 사무처장님 연봉이 꽤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많이 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희는 직장 급여 이것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31호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박우영 인사소통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방금 보고를 드린 부분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은 정부임금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1월에 송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 건으로 각 공공기관에 하달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임금인상률보다 좀 낮은 부분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공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상임 임원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2.7%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고자 금번 전체회의 안건으로 부의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32호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운영 주관처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38페이지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운영 주관처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40페이지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관료지원사업 의결을 받았고 그에 근거해서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관처 공모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한 이후에 서면 의결을 드렸는데 제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국 단위 극장에 대한 운영이나 대관료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유한 주관처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대관료지원사업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었다가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사업이고 공간지원사업의 일부를 떼서 이번에 일부 복원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 공모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은 공연예술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 3건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5,000만 원 이상 정도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료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관료 공간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사업운영이 가능한 실행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문화예술단체 법인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원예산은 총 26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5%는 선정단체 보조금에 쓸 예정이고 4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중에 5%에 해당되는 1억 5,000만 원이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주관처 운영비입니다.

해당 가능 항목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원신청 기간 접수결과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의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4~5건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2건이 접수된 단체 중에서도 1건은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증빙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 극장을 대관해서 대관 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사업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으로는 주관처 공모 대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격으로 정리를 했고요. 4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적격자지정방식으로 심의위원을 모셨고요. 심의 기준에 따라서 적격 여부를 ‘가’, ‘부’로 했던 심사입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결과로 ‘○○○○○○○○’가 주관처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신청액 26억 6,8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경비고 나머지 금액은 이 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 이 해당 단체들은 직접 보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 예정 인력은 4~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단체에 대한 메타 관리를 잘 해서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서면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서면의결은 총 11인 중에서 7인이 동의를 하시고 4인은 참여를 하지 않으셔서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장미진 위원 : 7명이 동의해도 부결이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서면의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장미진 위원 : 4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안 하셨나요? 저는 했는데요.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분들은 의견수렴을 안 하셨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처럼 전화로 말씀해 주신 분은 있었습시다.

장미진 위원 : 저는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전화를 받은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서면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없었고 그냥 유선으로 말씀해 주신 분은 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미진 위원 : 특별한 얘기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반대를 해 봤자 7명이니까 의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이 사업은 공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2022년도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요청해서 부활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처장님이 발언하신 것을 보니까 90억 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25억 원이면 굉장히 줄었다는 겁니다. 기대치에 비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경쟁률이 셀 것 같은 민감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연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등록공연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에 대한 지식이 특별히 있어야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나라도움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도 쉬워서 공연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공모사업을 ○○○○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인데 이게 가능한지가 납득이 안 돼서 이 질문을 계속 드렸거든요. 다른 분들은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코로나 기간 때는 50억 원 정도로 3년간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사실은 ○○○○○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관처를 통해서 그때도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 부분 등은 직접 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업규모 대비해서 ○○○○○에서 투입되는 인력이 4명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복원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2022년도 사업의 방식을 많이 흔들지 말고 체계적으로 그 방식대로 하면서 공간을 확장한다거나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가장 최근에 했던 2022년도 모델을 거의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걱정성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지원 사업이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한 ‘과(過)’의 부분을 분석해 보면 단체와 극장이 가격 자체를 상향 조정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록공연장이지만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도 심사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해 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지금 보면 ○○○○○쪽으로 대관료 사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 단위로 ○○○○○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로 서울의 대학로를 많은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활용할 때 왜 ○○○○○가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거나 혹은 공연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동호인들이 와서 대관하는 것처럼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요. 이것은 수월성을 보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한도를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수급 부분을.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단체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송시경 사무처장 : 골라내고 하는 부분들이.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극장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단체의 문제인데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도 일을 해 주면서 쪽 보거든요.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극장의 문제가 아니라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인데요. 극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보를 제공하면 될 일을 예술단체를 심의하는 일에 극장이 나서서 한다고 하면, 물론 그 전에 ○○○○○에서 어느 정도 해 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오랜만에 부활했고 액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일 텐데 %도 따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비 부담이 몇 %고 며칠에 한정된다는 구체적인 예도 없고 허들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그쪽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단체하고 극장하고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하더라도 모든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철저히 공개되면 좋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부정수급을 밝혀내는 것도 저희들이 할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밝혀냈던 부분이 있고요. ○○○○○는 이것만이 아니라 문체부 예산 사업으로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도 해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옛날부터 그런 것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관료부분을 밝혀내는 부분은.

장미진 위원 : 이걸 일반 공연예술지원 공모사업보다 어찌 보면 의미가 더 크다는 말이죠.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장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장미진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획사로 넘기지 말고 직접 사업을 수행해라.” 라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사무처장의 답변은 그 이후의 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가짓수도 많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정부의 방침은 가능하면 정산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사를 지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부정수급자나 적정한지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대비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 정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사업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과정에서 많은 액수 때도 행행을 했는데요. ○○○○○에서 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하는 입장에서, 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요. 그 이전에도 했던 기관이 선정되어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줄어들 수 있다.

장미진 위원 : 몇 번이나 ○○○○○에서 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022년도에 했고요. 이것 말고 두 번 했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훈경 위원 : 저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이훈경 위원 : ○○○○○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극장의 컨디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극장들이 이런 사업이 아닐 때 내놓는 대관 비용과 이런 사업을 받았을 때 대관 비용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예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을 들어오는 단체와 극장들이 지원사업이 되면 얼마를 내고 지원사업이 안 되면 얼마를 낸다는 게 암암리에 이야기가 돼서 실질적인 거래내역과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디션까지 문예위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지점일 것이고요. ○○○○○는 전국에 있는 극장들의 대관 현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극장들이 얼마로 나왔을 때 적절한지 적정하지 않은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장미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해충돌이라든가 심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예술작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중복성으로 저희 사업의 수혜를 받아서 대관료가 창·제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받았는가? 그것을 다 제외하고 기타 등등 대관료로 받을 수 있는 중복사업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그렇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금액 안에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70~80% 정도는 대관료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에서 조절하는 수위의 역할들을 ○○○○○가 하는 것이지 “제작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를 거쳐서 예술성과 파급력을 따져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기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았을 때 문예위에서 하는 것보다 ○○○○○에서 하는 게 훨씬 가성비, 인력대비, 시간대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더 큰 장점으로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이 문제를 앞서 지나갔기 때문에 공연예술대관료지원과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안 했는데요. 앞서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공연예술대관료지원도 2020년까지 있었다가 폐지되었고 올해 복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연극계를 취재도 해 보고 여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극장이나 연극인들에게는 실효성과 필요성,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폐지가 되었을까?” 아까 송시경 사무처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부정수급 문제가 있어서 문예위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이 사업과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이것도 공연예술에 5억 원, 시각에 1억 2,000만 원이고 대관료지원도 26억 원인데 아까 설명에서도 실제 운영비로는 ○○○○○에 지원하는 것은 1억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이훈경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과 ○○○○○ 단체가 선정된 게 옳으나 그르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예술위는 현장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보다는 문예위 주최의 행사성 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개념이잖아요. 하도급 내지는 다단계 개념인데 문예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지원기구로서 정체성과 위상이 있는데 하도급과 다단계 지원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문예위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처에 자료 요청도 하면 업무과다로 인해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갑질이다.” 문예위 노조에서 온 질문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으로서 당연히 자료요청을 하고 분석하고 리서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직무에 속하는데 문예위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어려울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4월 21일에 1차로 보내준 39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질의와 의견 및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6쪽짜리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거기에도 피력되어 있습니다만, 문예위 직원들이 나주와 서울을 오고가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문예위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체성, 업무를 개발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정교한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행사성, 문예위가 행사성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문예

위 고유의 기관 정체성이 희석되고 사무처 직원들은 업무과다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누적되면 “문예위가 지원기구로서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관 정체성에 부합하는가?” 문예위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설계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밀도 있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체부에서 정부 방침이라고 해서 정산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말씀을 3월 18일 무용 현장업무보고 때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체부 쪽에 물어봤습니다. 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ですよ. 공적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적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하고요. 정산의 의무는 기본사항이고 이게 공정하게 쓰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심의도 공정해야 하겠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산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했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체부 방침으로 정산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조금 제가 볼 때 취지가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문체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면, 정산의 문제는 장관님께서 우리 간담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정산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요. 또 현장 간담회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간편하게 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정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개인이 하지 않도록 편의적으로 만들어주자는 취지고요. 장관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대관료지원사업은 2022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그 이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 워낙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어렵다고 하니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가깝게 늘어나서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요. 2022년 코로나가 끝나면서 기재부 방침이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했던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그 이전에도 액수가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생긴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아예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국회도 찾아갔고 기재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누차 우리 직원들도 의원, 보좌관을 찾아다니면서 살려 달라고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살릴 수가 없었고 작년에도 이 작업을 해서 올해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하기 싫어서 안 했던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심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한테 30분 정도 발언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흘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전체회의 초반에 장미진 위원님께서 노조 관련해서 녹취를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후에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노조에서 2024년 11월 28일자 10쪽짜리 전담심의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 개인적으로가 아니죠. 공적 문서가 와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조에서 온 문건에 저희가 전담심의 TF회의를 2차례 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과 2024년 10월 21일에 했는데 노조에서 저한테 주신 문건에는 이 당시 회의를 한 녹취록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3~4인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무용계의 전문가들이 ‘○○○ ○○○ ○○○○ ○○’ 이라고 해서 건전하게 포럼을 하는 것까지 문건에 있어서 사실 무용계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풀어서 인용되어 녹취록을 제가 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4월 16일자로 답변서를 빨리 써야 되니까 사무처에서 주신 답신에는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을 노조에서는 허위로 인용이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또 녹취록이 없다는 이야기가 허위고 거짓인가? 그래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한테 온 것과, 그때 전담심의 관련해서 논의했을 때 무용계에 공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무용계의 건전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 민간 활동까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고요. 전담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비판과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월 17일 노조위원장님께서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이 온 것을 보면 그 당시 TF 회의에 참여한 해당부서의 직원이 녹취를 해서 노조 측에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가 메일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에 걸쳐서 제가 녹취록 존재 여부와 함께 저한테 제공해 달라고 할 때는 왜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TF 회의 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녹취가 되고 있느냐?”, “기록이 되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녹취되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과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녹취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였다면, 또 내용의 변질과 왜곡의 우려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안전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끝내고 하면 안 될까요?

성기숙 위원 : 지금 말씀을 드리고 퇴장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가 겹쳐서요. 왜냐하면 위원으로서 전담심의, 실연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전체회의의 의결권은 위원으로서 갖는 고유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사무처의 실수로 침해되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업과 관련해서 49쪽을 보면 1차 심의가 서류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구문모 위원님, 김진각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의 전담심의 참여사업을 오늘 의결하는 거잖아요.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건인데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 외 공모사업 지원심의 참여 여부라고 해서 가결 시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의 필요성 때문에 오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문정신사업 심의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은 아니고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이 아닌 일반 공모사업을 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규정 개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문예위에서 하고 있는 전담심의 미적용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인지? 그러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논의 없이 이렇게 문건으로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인문정신 심의에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문학이라든가 시각예술,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인문적인 철학과 담론을 입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르 위원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담심의 적용 사업 외 공모사업의 지원심의를 위원들이 하는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 의결 안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1차 서류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 개정 그다음에 후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구문모 위원님과 김진각 위원님은 개정사항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서류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소위원회 관련인데요. 소위원회가 여러 의견수렴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그다음에 지원체계 개선에 관심이, 전담심의에도 직접 참여를 했고 작년 10월경에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도 상정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장한 다음에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는 제가 소위원장으로 참여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양보를 한 격인데요. 사무처에 제가 퇴장을 함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후속으로 서면질의 내지는 의견 개진을 드리면 제395차 위원회 전체회의 기록으로 남겨 주심사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진짜 참여해서 드릴 말씀도 있고 의견개진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퇴장하겠습니다.

(15시 22분 성기숙 위원 온라인 퇴장)

정병국 위원장 : 일정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유감인데요. 늘 회의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먼저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심사 일정과 중복이 되게 한 것이 사무처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일정을 언제 결정했고 심의위원들께 언제 어떻게 통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도 10월 8일에 일정 공고가 이미 공개적으로 되었고요. 2024년 12월 24일 모든 심의위원들에게 일정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4일에 일정을 심의위원들께 모두 메일로 보내드렸고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2025년 3월 15일에 그 메일을 확인한 것을 전부 다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그러시겠지만 각자 다 일정이 있으신데 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각자 본인의 일정을 가지고 체크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저는 사무처에서 이것을 잘못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을 제대로 안 알려드려서 이런 사태가 나오게 만들었나?” 라고 했더니 이렇다는 상황을,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무처에게 이런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일정이 조율이 안 돼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어서 조율이 되면 조율을 해서 한 분의 위원이라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일정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회의로 참석하실 수 있게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예술대관료지원 운영 주관처 공모 지원심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위원님들 중에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위험한 언급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성비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가성비로 해야 되는데요. 그 가성비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정책방향이라든지 여러 사업성격에 대해 가성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가성비 기준으로 한다면,

정병국 위원장 : ‘가성비’ 라는 얘기를 누가 했나요?

구문모 위원 : 언급이 있었어요.

이훈경 위원 :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효율적이라는 거죠.

구문모 위원 :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가성비’ 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우리 문예위가 직접 할 경우와 대행을 했을 경우 비용을 감안.

정병국 위원장 :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디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는 거죠. 비용만 따지는 것은 아니죠.

구문모 위원 : 효율성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효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건설업체 같은 경우 하도급을 계속 하니까요. 그러나 공공기관이 했을 때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해체하고 다른 대행으로 전체를 맡기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가성비’ 라는 비용효율성 측면에 대해서 대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파급효과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충분히 구문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성비’ 나 ‘효율성’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몇몇 추가적으로 임시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객관성을 띠거나 투명한가? 또 효율적인가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경비적인 측면만 따진 것은 아니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전적으로 구문모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 라는 말의 관점이 사실 똑같은 단어지만 예술적인 관점에서 ‘가성비’ 와 산업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구조의 ‘가성비’ 는 산출해 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보는 ‘가성비’ 는 우리가 매출구조나 수익구조는 아닌 뜻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안건은 지원심의 결과 안건이잖아요. 이미 심의를 했고 결과를 공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거라서요. 저는 앞으로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들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고를 할 때 이미 이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을 앞두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재공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재공모가 나가지 않아요? 재공모가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1,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대학로의 소극장 상황을 보면 1,500만 원이지만 상설공연을 할 경우 하루 대관료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15일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도 소극장에서 뮤지컬을 제작해서 올려봤지만 사실 공연을 하는 연극단체나 예술가들은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가량의 대관료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공연으로 15일을 올려도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수익으로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대안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는 정산을 할 것이고 재공모를 하는 그분들에게 정산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재공모나 재재공모도 e나라도움에서는 정산시스템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회계는 이중회계로 가고 있잖아요. 공모를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e나라도움에서만 회계가 되었지만 본인들이 외부 회계를 맡기잖아요. 외부 회계를 맡기죠. 외부 회계사가 본인의 사업비

를 다 해서 검증 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다시 올리면 공모한 단체에서 전체 회계를 또 보잖아요. 그래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반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겠지만 지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만 이용을 하면 정산의 문제점은 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완의 느낌으로 공모하는 사업만 회계할 것이 아니라 재공모가 나갈 때도 그분들이 1,500만 원의 대관료지원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1,500만 원 정도를 회계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진각 위원 : 저는 선정방식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담당부서한테 여쭙보고 싶은데요. 2건 중에서 1건이 걸격되었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적격 여부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보통 재공모를 하지 않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통상적으로 재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용을 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도가 재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 여부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인지,

김진각 위원 : 답변을 누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저희 예술위원회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부서나 회계부서입니다.

김진각 위원 :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상 다른 공모사업의 주관처를 선정하는 절차와는 다르잖아요.

송시경 사무처장 : 통상 계약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민경보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 틀은 적용되지가 않는 거라서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으로 보면 어떤 전문기관을 초이스 하는 것인데요. 내부에서 풀 때 계약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 부분은,

김진각 위원 : 그런 규정이 있나요?

송시경 사무처장 : 민경보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계약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계약에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송시경 사무처장 : 다시 재입찰을 하고 계약으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진각 위원 :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이게 계약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보통 저희가 일반수용비나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 같은 용역비의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계약으로 진행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나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는 저희가 공모 형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민경보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계약부서에 물었더니 계약과 관련된 건은 아니라 민경보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공모이기 때문이에요. 공모인데 2건이 신청했고 1건이 아예 자격조차 없어서 1건만 남았잖아요. 1건에 대한 것을 기존 심사의 틀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격 여부만 판단해서 그냥 패스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냐를 여쭙본 것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방금 문의해 주신 대로 틀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왔더라도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다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성격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규정이 있느냐?” 라는 부분은 자체 내에서 하는 일반수용비나 연구용역비에 대한 계약 부분은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민경보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 제가 여쭙보는 거잖아요. 적격 여부 판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송시경 사무처장 : 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심의위원이 한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한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심의위원들이 적격 여부까지 판정을 하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심사를 한 거죠.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적격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재공모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심사위원들이 한 개지만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는 판단이 돼서 올라온 것이죠.

구문모 위원 : 저는 이게 적합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을 보면 신청건수가 없으면 잘못하면 담합을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신청 미달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패스를 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적격한지 아니면 부적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데 적격으로 갈지 다시 재공모를 할지? 1건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공정하지 않고 맞지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쭙본 겁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보조사업 중에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 창·제작에 대한 것은 지원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관료지원사업과 같이 지원기능, 전달체계를 같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단체와 협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작품제작지원단도 마찬가지로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예술팀 같은 경우 올해 수행을 해야 될 주요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술도약지원 같은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지역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안착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료지원사업도 어렵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적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이전에 했던 ○○○○○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전달체계를 원만하게 진행해 왔던 것이고 지금 2개의 단체가 지원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미진 위원님이나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까지 보조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나?”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팀에서 지역예술도약지원이나 공연예술 제 통합 유형에 대한 올해 과제들을 잘 완수하고 이 대관료지원사업을 향후 어떠한 전달체계로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념해서 검토해서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이게 주관처 공모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예술작품이나 예술 콘텐츠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게 많습니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처 공모사업이라서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서 저는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문모 위원 : 저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하나요? 이것은 경영문제인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한 다음에 문예위로 넘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어요.

김진각 위원 : 이것은 심의위원들의 월권인 것 같은데요.

구문모 위원 : 사업 성격의 제안 문제를 갖고 저희를 설득한다고 하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훈경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저도 심사를 위해 타 기관에 다녀보면 만약 지원한 단체가 이것저것 제외하고 1개 단체만 남았을 때 그 단체가 결격의 사유가 있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면 사무국이나 운영 측에다가 “도저히 없는데 재공모를 나갈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봐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재공모가 나갈 수 있고요. 1개 단체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굳이 재공모가 안 나가고 이 단체로 하겠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무국과 “가능하다.” 라고 하면 충분히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만약 그러려면 ○○○○○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했을 때 재공모를 나갈 수 있는데 이미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개로, 그렇다면 앞으로 문예위는 주관처 공모나 기타 사업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걸쳐서 공모로 나갈 것인지 직접 진행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또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약간 별개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눠서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개 단체나 1개 단체만 남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 단체가 남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적격만 보고 판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만 중구난방 식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의위원한테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격 여부를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정리해서 할 게 아니고요. 김진각 위원님의 요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예 없으면 당연히 재공모를 할 것이고요. 공모를 했는데 1개 단체만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사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2건이 들어왔지만 1건이 결격이 되면서 1개만 남았을 때 이 자체만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니까 앞으로 이 규칙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님 반대, 왕치선 위원님 반대, 구문모 위원님 반대입니다.

그러면 성기숙 위원님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러면 10인 중에서 3인이 반대하시고 7인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아직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외부로 위탁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심사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전문가 토론을 해서라도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규칙이 애매모호해서 논란이 되었던 단일 응모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을 완벽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1133호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심의에 대한 비상임위원 참여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안건번호 1133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있는데요. 그게 인문정신문화사업은 공모형 사업과 기획형 사업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공모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숙하신 창작지원 쪽의 공모사업과 절차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면 운영규정 개정을 제안드린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외부인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은 외부인사 외 위원회 비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이 아니라면 위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문정신문화사업에 심의참여를 제안해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요. 장르 쪽에서도 이미 위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봐 주시면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해서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사무처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제한의 범위를 없애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공모사업과 기획사업이 나뉘져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여기에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모를 받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문정신문화사업 중에는 좀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게임에 과몰입한 청소년의 경우

에는 게임문화진흥원과 협업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장미진 위원 : 구체적으로 사업명 5개 중에 어떤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49쪽에 있는 사업들은 다 공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사업은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고요. 아마 전전차 회의에서부터 전차 회의까지 인문정신문화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았습시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잠시 의견을 드릴까요?

정병국 위원장 : 먼저 서승미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서승미 위원 : 질문입니다. 그러면 비상임위원이 현재 문예위의 모든 사업 심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너무 특정 위원님께서 많은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총량제나 범위를 하나의 문제로서, 하나의 틀로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아닐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시범운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전담심의회에 있어서 비상임위원의 참여가요. 그런데 어느 날 확정돼서 위원이 모든 사업의 심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예위의 비상임위원의 역할이 완전히 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권리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지금까지 너무 오랜 과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보고 때 전통예술 쪽에서는 분명히 전담심의회에 대해서 비상임위원이 그 장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는 많이 개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싶거든요.

구문모 위원 : 제가 의견을 잠깐 드릴게요. 제 이름과 김진각 위원님이 거명되어 있고 저는 김진각 위원님이 들어와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다른 기관이 맡아서 했는데 처음으로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전담심의회와 관련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룰 때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 풀을 구성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에 공모 전담심의회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 2개는 다 못 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

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못 하게 하는 제도도 있고 이해관계를 배척하는 제도적 보완도 있고요. 투명성이나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비상임위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 높게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견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일단 전담심의제에 관해서는 제 기억으로도 너무 긴 시간 동안 논쟁을 해서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리고 “작년에 해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자.” 라고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단 과정 없이 올해도 진행되는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도 현행에 외부인사가 쓰여 있으면서 “비상임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모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열려지는 것이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저희가 심사에 들어갔을 경우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칫 어떤 사업은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심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의결할 때 의결할 수 있는 위원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까지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열어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량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만약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심의제에 들어가는 게 강행되어야 한다면 저는 반대를 했지만 강행이 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이 아닐 경우 필요하다면 사무처에서 위원님들께 심사에 참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게 낫지 이것을 다 열어버리면 그것에 따른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같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했던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일정이 가능하신지가 의아합니다.

배은주 위원 : 지금 비상임위원 참여 결정의 건에서 보면 추진배경 및 경과가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경과는 다 설명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후속조치인데요. 후속조치는 지원심의운영규정을 바꿔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심의규정을 오늘 의결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 없이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의 현행을 바꾸기 위해서도 저희가 많은 회의를 했거든요. 현행을 바꾼 것도 3번 정도 회의를 하고 저희가 따로 모여서 현행을 바꿨는데요. 현행을 또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인문정신문화사업의 부분적으로 전담기관이 된 것 아닌가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전담기관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장관하고 협의를 하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문정신확산팀을 꾸리게 되었고요.

정갑영 위원 :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원래 문화정책국 소속 아닙니까?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전담기관은 3년마다 지정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

쥬.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규정을 바꾸는 게 지원심의 운영규정입니다. ‘지원심의’ 문화예술위원회나 문예진흥원이나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인문정신문화사업이 다른 예술 영역에 지원했던 것과 같은 의미의 지원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의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심의를 하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가능해요. 그런데 지원심의제도이기 때문에 지원심의라는 것은 고유한 목적성, 해왔던 경과상 예술지원을 의미했다는 말이죠. 예술인과 단체 지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문과 예술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까 예술에 인문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인문과 예술은 엄밀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문정신문화라고 했을 때도 원래 시작이 문학하는 분들과 철학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처음 시작을 했던 목표는 인문대학이 너무나 푸대접을 받으니까 그것을 사회적 지원해 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예술 고유지원 기관에서 인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전담이 되었다고 하니 인문정신문화 고유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포함해서 꼭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던 또 어떤 심의위원이 하던 간에 고유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고유목적에 충실하다는 것은 여기에 적합한 전문인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술관련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혹시 들어온 심의 내용 중에 예술이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뭘 한다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전히 해 왔던 관행상 인문정신문화사업을 심의한다고 예술 영역에서 끼어들면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처음에 이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도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부의시켜서 논의를 해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의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미진 위원 : 잠깐만요. 지난번에 전담심의회 때 워낙 우여곡절을 겪어서 저는 여기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를 았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1차 서면심의회는 끝난 상태에서 2차 인터뷰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의견을 묻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이번에 전담심의회위원이 참여한 것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겠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문화일반 쪽에서는 참여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것까지 한번 문화일반이 들어가서 해 보고 나서 연말에 점검하는 회의가 있다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류를 시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예술위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3년 단위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인문학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초기에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문화일반 쪽에서 관여를 해서 들여다보면서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심의에 들어가서 볼 것은 좀 보고 하나의 가이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참여 의사를 비쳤는데요. 서면심의회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저희는 들어가면 인터뷰 정도만 하는데요. 사실 인터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술지원의 측면보다는 일반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적 지원을 예술위가 역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접근하고 저희가 이것을 잘 설계도 하고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심의규정을 바꾸는 것 자체는 우리 문예위의 전체적인 골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규정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숙의를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훈경 위원 : 심의규정을 바꾸는 것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있으니까 보류하거나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장미진 위원님이나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정신문화사업 건에 한해서는 사무처에서 요청해서 참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때요? 심의규정을 바꾸지 않고 참여가 가능해요?

정갑영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원심의를 하는 전담 심의와 일반 심의는 다릅니다. 그 문제하고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일반을 4~5명을 넣었던 것은 사실상 인문학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회계, 재정, 정책, 지역, 문화산업과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일반을 넣었고요. 예술이 그런 의미가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문학은 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통상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문학,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리학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문화일반으로 왔으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보신다거나, 또 이렇게 경험하고 본다는 것은 이 자체보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전담심 의 문제와 관련해서 경험을 쌓는 의미니까 그런 정도로 머무른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따져봐야 될 규정도 많은데 그것까지 바뀌가면서 넣는 것은 좀.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2가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문학프로그램도 지원심의에 해당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예술이나 문화일반이나 장르나 분야의 문제는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지원심의를 대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르의 문제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지원'이라는 행위 때문에 지원 행위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원심의회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굳이 규정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50페이지에 있는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지원심의회위원회 구성의 원칙은 외부인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처 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내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참여한다면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규정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건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갑영 위원 : 잠깐 따져봐야 될 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지원심의회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그대로 붙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 배분도 있고 보조금의 영역은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문정신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선불리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업무로 해 왔던 예술지원사업과 인문정신문화 위탁사업은 성격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시켜서 전담심의회에 다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의 개념으로 규정을 바꾸면 몰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해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취지도 심분 이해가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

면 심의규정 근본을 건들지 않고 참여해서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연구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데요. 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내로 팀을 짜든지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서면의결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서승미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인터뷰심을 하지 말고 아까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여러 가지 취지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싶거든요. 지금 하는 형태처럼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방법론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죠. 이 안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소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025년 소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전략소위원회,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 4월 5일부터 운영이 시작돼서 공식적인 운영 시기는 1년인 4월 4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었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3페이지부터 바로 구성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기존 소위원회의 유지와 함께 새롭게 제안해 주신 소위원회를 대략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먼저 기관운영 관련된 소위원회는 문예기금 안정화 대책 마련과 경영전략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경영전략소위원회를 연장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문예기금재원안정화소위원회’ 그리고 데이터 기반 예술지원사업 분석 연구 및 기금운용 개선을 하는데 쓰자고 말씀하시고 ESG 경영도입 및 지속가능한 예술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미래예술정책소위원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상임위원의 역할과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신 ‘위원회 운영 및 제도개선소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가 기관운영에 관련된 소위원회로 제안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먼저 기존에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창작지원 체계나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해서 ‘예술창작혁신소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모지원체계 내에서 AI창작기준을 모색하

고 저작권이나 윤리문제로부터의 제도적 문제 또는 제도적 보호를 모색하는, 그리고 표현의 방식을 확장해서 장르적 융합을 다루자고 말씀해 주신 ‘AI예술소위원회’도 제안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화향유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회 사업 안에 통합문화이용권이나 청년문화패스 같이 저희가 바꾸쳐 형태의 사업 외에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문화예술공감소위원회’를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후원활성화와 문화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께서서는 마찬가지로 현재 3개의 소위원회를 연속선상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3개의 소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현재 소위원회 틀을 유지하면서 올해 2025년에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소위원회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기존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어떨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전략 수립과 기금안정화 대책 마련 등 2가지를 안건으로 구분해서 시점을 나눠 초반에는 경영전략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뒤에는 기금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다룬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안건들을 기존에 있던 경영전략소위원회,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예술향유사업 같은 경우 소위원회로 다루기보다는 사업개발을 하는 TF나 제안 형식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의 소위원회가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초라서 구성시기가 다소 미루어졌는데요. 만약 가능하시면 오늘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달에는 참여하시는 소위원회까지 확정해서 의결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몇 개 정도의 소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가이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대략 몇 개 정도가 운영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에 따라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4개 정도를 제안해 드리는 거죠. 4개 정도로 묶고 각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영전략소위원회면 이 안에서 그 자체 아젠다를 하나씩 맡아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것을 다 늘려서 소위원회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하기가 버거우실 것이고요. 어떤 소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4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일단 기존 3개의 틀에서 4개로 확대되는 것이고 3개 소위원회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3개 소위원회를 하셨던 위원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을 독립시킬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경영전략소위원장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정갑영 위원 : 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기금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다루었죠. 그것도 한

달에 1번 혹은 2번을 하는 회의 가지고는 사실상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고요. 대신 중장기계획을 직원들이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고요. 기금 안정화는 연말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경영전략소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경영전략이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넓힌다면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범주.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경영전략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 있는가? 이것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경영전략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회는 경영전략을 포함해서 어떤 제언의 성격을 지닌 것인지 의결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하되 모든 것을 논의하면 이것은 공허한 얘기가 되고요.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젠다를 몇 개 설정해서 어떤 위원회에 얘기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합당한 방식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고 그러나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될 집중적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어떤 것을 설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제도개선이라고 넣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말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바뀌어서 새로운 위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위원장이 오시고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이 설정된다면 공정성 문제나 블랙리스트 얘기를 위한 위원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월이면 우리한테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 안 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요.

이훈경 위원 : 예.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사실 지난 연도 가을을 넘어가면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같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활동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고자 했던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예술 쪽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었고 연극 관련 대한민국연극제 100인 토론회를 진행했었고요. 타 장르 위원님들께서도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계속 노력했으나 그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중단이 되었어요. 사무처에서 공연예술팀 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의결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소통 창구로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생태계 현장 조사 인터뷰 관련해서 이 소위원회는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과 신규 사업 2가지를 묶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창작지원 체계 개선방안이나 지원심의제도 개선은 예술창작과는 별개로 가야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여러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소위원회로 뭉쳐졌을 때 너무나 다뤄야 하는 담론도 많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할 소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진각 위원 : 저희는 사실 법령 개정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할 때는 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대한 개정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왔지만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령 문체부에서 새로운 예산으로 40억 원 가까운 돈을 주면서 지역 중심의 예술과 기업의 연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매칭 지원 쪽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술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예술후원활성화로 이어지는데 이것과는 동떨어진 쪽으로 간 측면이 있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연장 측면에서 가치확산소위원회를 또 하게 된다면, 특히 후원활성화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결국 후원활성화법을 고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일종의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예술가치확산은 사실 큰 성과라기보다는 계속 진행형, 모든 게 진행형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큰 예산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어쨌든 간에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참

여를 해 주셨고 경영전략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중장기비전전략, 경영전략개선 등을 이뤄냈고 그것에 의해서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향이나 사업 방향이 재정립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전체회의로 1달에 1번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별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예술현장과 연계되면서 접점을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저는 문화지표 개발이나 후원지수 개발. 그리고 우리 진흥기금을 어떻게 하면 계속 증대시킬 것인가를 갖고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국회의원에게 환기시켜 주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마냥 논의해 봐야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명칭은 바꾸더라도 이 3가지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소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 제안하신 위원님들은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아젠다 설정을 그 위원회별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훈경 위원 : 지원 개선만 별도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지원 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소통이 아니라 하게 되면 경영전략 쪽으로 가게 되나요?

구문모 위원 : 어떤 위원회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비전을 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시작될 것인데요. 그 비전을 중점으로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3개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거대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보다 비전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견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2030 비전을 봤는데요. 큰 카테고리 4개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경영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은 TF 같은 것을 따로 구성해서 액션 플랜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F로 설정할 것과 비전을 견제할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원사업 개선은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 익년도에 사업개선을 하기 위해서 논의가 또 이루어지는 만큼 이것은 TF팀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경영전략소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재원안정화, ‘문예기금 재원안정화’ 사업은 예술가치 확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아니요. 기존에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후원활성화인데 이쪽으로 묶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보통 제도개선을 할 때 국회나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기획조정팀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경영전략소위원회가 우리 법정 기구도 아닌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

아요. 여기에 일이 너무 몰려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문예기금 재원안정화’ 이 아젠다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3개는 참여하는 위원님들 간 역할분담을 하시고 아젠다 설정을 해서 운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창작소통은 지금과 같이 장르별로 조금 더 밀착돼서 현장과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감’은 별도로 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견을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승미 위원 : 제가 의견을 봤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어떤 취지인지?

서승미 위원 : 비전 자체가 국민으로 향하자는 거였는데요. 저희 문예위 사업 자체에서는 향유프로그램 자체가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자. 그리고 지역소멸 부분으로 해서 공연을 갈 때 그 지역을 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도 까먹었네요. 그리고 따로 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술가치확산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술창작소통 쪽으로 가서,

정병국 위원장 : 예, 소통 쪽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승미 위원 : 다 상관이 없고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를 저희가 해 보니까 현장과의 소통 부분은 좋은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는 2차년도에 각각 장르별로 커다랗게 묶음을 갖되, 커다란 아젠다는 가지고 가되 각각 장르에서 2차 생태계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 부분들은 소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내에서 문화예술공감 아젠다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지원사업 개선은 TF팀으로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등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소위원회에 참석을 하실지 사무처에 알려 주시고요. 그것을 전부 다 통보해 드리고 조정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는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에 대해서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55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술관 연간 계획을 보고드릴 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전시운영에 대해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5페이지 (1)번은 내년도 국제미술전의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시 예정이고요. 예술감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코요 코우’ 라는 디렉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전체 주제는 5월 20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 시각예술분야 위원님께 사전 자문을 드려서 운영자문위 위촉에 대해서 자문을 드렸고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경우에는 한국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여기에서 감독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후보가 추천되면 이들로 선정위원회를 위촉하고 이분들이 신청접수가 들어온 신청서를 심의해서 감독을 선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이 되었고요. 미술계 전문인사 4인과 당연직으로 사무처장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분들로 2월 18일에 회의를 추진해서 선정위원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예술감독 공모를 오픈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예전 미술전에 비해서, 예전 미술전에는 10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예술감독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총 7인의 국내외 인사로 구성이 되었고요. 모두 10년 이상 현장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특히 이 안에는 예전 예술감독 그리고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예술비엔날레의 상황을 잘 아실 수 있는 기존의 베니스비엔날레나 다양한 비엔날레를 역임하셨던 해외인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18건의 접수 건에 대해서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전시기획안의 우수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전시예술감독의 역량을 놓고 서류심의를 진행했고요. 총 18개 팀 중에 4개 팀을 2차 인터뷰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를 보시면 4월 21일에 인터뷰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이 모두 PT를 해서 전시기획안을 발표하고 선정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토론을 통해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고 만에 하나 최종 선정자가 일신의 이유로 감독직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선정자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선정결과 예술감독으로는 ○○○ 기획자가 선정되었고요. 참여 작가로는 ○○○, ○○○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원자 목록은 58페이지 붙임자료로 나와 있고요. 선정된 예술감독과 전시기획안의 개요가 59페이지와 60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는 선정위원들의 심의 총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보고안건이 접수되면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예술감독과 전시계약을 체결하고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마도 올해 30주년 행사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베니스비엔날레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때보다 지원자가 많았고 굉장히 내용도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분들이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비엔날레관을 꾸며주실지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울러서 제가 지난 2월에 미국 출장을 미술관 중심으로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한국 미술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너무 달라졌고요. 그 과정이 지난해에 있었던 베니스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특별전 전시 이후 거기에 참여했던

36명의 작가들이 이후 그것으로 연결된 전시가 무려 53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런 것을 보고 베니스비엔날레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미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참여를 하는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체육기금 202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작은미술관은 체육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생활환경 내에 미술관이 없는 문화향유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소유한 폐·유휴 시설을 작은전시장으로 조성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올해 10주년이 되는 해고요. 연간 10여 개의 작은 미술관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크게 두 가지 트랙인데요.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비를 매칭해서 조성을 합니다. 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건설비용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규 조성하는 곳들은 기본 3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 나주에 작은미술관이 그렇게 조성되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신규 조성으로 2건이 들어와서 2건 모두 선정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조성된 공간을 지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으로 올해 4건을 선정하게 된 것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면 선정된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다운의 2곳이 신규로 조성된 곳입니다. ○○도 ○○시와 ○○○도 ○○시가 선정되었는데요. 각각 재단에서 신청을 하였고 민간 운영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소멸과 연결해서 기획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총 6개의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사업들을 운영했었는데 그중에 강원도 태백지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 ○○○○’ 이 이번에는 태백시와 삼척시 경계에 있는 도계마을이라는 곳에서 삼척문화재단과 함께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이미 조성되어 온 작은미술관을 연속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 그리고 ○○ ○○의 ○○미술관, ○○ ○○군의 ○○문화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명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15)번 하단의 떨어진 단체까지 거의 대부분이 기초문화재단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여년 전에 시작할 때만해도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초단위에서도 지역재단이 많이 신설됨에 따라서 재단 중심으로 신청 주체들이 재편되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1)번의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작년에 출범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은미술관 사업이 예산이 있을 때는 진행이 되다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나 지속성이 항상 고민되었는데요. 기초기관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고민들이 상당부분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서 진행해온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진 위원 : 사업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만 봤을 때 의미를 그렇게 찾았다면 “2건만 접수가 되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작은미술관은 좋은 사업이고 제가 지역에서도 이런 미술관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2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조성의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이 의무사항이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추경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한 첫 해에는요. 그래서 매년 신규 조성의 경우에는 신청률이 지속 활성화 트랙보다는 신청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1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은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 모니터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장르별 평가모니터링 계획은 지난달 계속 진행된 전담심의위원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문화일반 위원님들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각 사업별, 장르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추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목적은 지난해 전담심의제를 시범운영할 때부터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모니터링평가를 확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환류하려면 실제 그 사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속 연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2025년 문예기금 지원 사업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사업별 평가 추진계획 현황을 보시면 ‘아르코문화작가펠로우십지원’ 그리고 ‘대본공모’와 같이 평가 시행이 불필요하거나 교류협력팀에서 공모하고 있는 국외 추진사업들은 국외 협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위원 같은 경우 이전에는 심의위원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 전문가도 필요시에 활용해서 평가위원으로 모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우선적으로 전담심의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 심의에 참여하신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요. 다만, 현장모니터링을 운영시에는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에 다 가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새롭게 위촉해서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도록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성 위원님께서 심의위원 후보단도 좋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에 참여하고 있는

전담심의위원들이 창작주체 모니터링에도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해당 내용은 공연예술팀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방식 같은 경우 73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 위탁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의견이 나왔듯이 평가위원 사례비나 혹은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과업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플러스 실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평가내용 그리고 최종 검토 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선내용도 포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만들었고요. 다만, 2인 이상의 평가위원도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서 합평회와 같이 공유 및 논의를 위한 종합 검토회의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전담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현장평가 시스템을 4월에 구축했고요. 아직 시범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기록들이 심의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전담심의위원 검토 회의 때도 기관의 사례비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산 상황으로 증액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만 수도권과 달리 1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을 다 통일했습니다. 여비지급 같은 경우에는 붙임자료에 있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비상임위원님들도 기존처럼 모니터링에 참여하실 수 있고 해당 사례비나 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전체회의 자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매달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더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기관 사업을 단년지원과 다년지원으로 나눈다면 단년지원 사업은 한해 지원으로 일단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기관 내 혹은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가 관계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다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구조를 가지기는 했지만 차년도 지원여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감액 혹은 증액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제가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전담심의제가 논의되면서 장르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항상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을 전담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 전시와 이런 부분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일반 위원님들도 장르와 상관없이 이런 모니터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향후 연말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르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 여러 행정적인 것, 과정, 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반 위원님들도 당연히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김미라 위원 :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일반 위원님들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소통이 되어서 하시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

로 봐요. 오히려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장미진 위원 :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안내를 받고 저도 하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 말고 이번 회의자료 맨 뒤에 5월 지원사업 일정에서 참관 안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보시고 가능하시면 모니터링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훈경 위원 :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사무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명확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모니터링을 나가는 게 그냥 위원님들이 참관을 해서 공연을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평가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히 신청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신청을 하시고 나가시게 되면 일비는 당연히 지급되고 그 결과보고서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이훈경 위원 : 그게 아마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때 이훈경 위원님께서 전담심의위원회 검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실제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은 다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으로 평가서를 별도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신 내용은 최종 모니터링 평가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미진 위원 : 저 같은 경우 발레축제 모니터링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작품을 보고 모니터링을 작성해서 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 ○○○ 하나의 작품만 보고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이 너무 안 맞잖아요? 작품 하나와 축제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서면평가는 실제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사업개선 관점으로 해서 평가지를 만들어서 요청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사업만 가능하신 일정 안에서 관람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전담심의제도로 했을 때는 처음에 심사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전담심의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을 같이 보시게 된다면, 내부에서 협의했던 바는 일단 전담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두 분이 가시고 이 부분의 모든 것을 평가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아까 합평회처럼 하고요. 대신에 전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내시는데요.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면서.

장미진 위원 : 연극 한 편에 여러 명이 가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

셨듯이 심의 부분에 국한해서만 피드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시라 현장도 보시면서 정책제안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있고요. 다만 문제가 내부에서, 국회에서 나왔던 부분이 여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여비를 통해서 가실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내부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은 같은 공연에 물리게 되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일반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가시게 되면 현장 소통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공연 실연자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 엄청나게 격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모 위원 : 3번 정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해서 물리는 경우도 있었나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제가 경험을 들어보면 모니터링 보고서가 있는데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시죠.

구문모 위원 :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써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공란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모니터링 포맷이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쓸데없는 칸은 없애세요.

김미라 위원 : 사업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하나의 양식을 고민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전담심의위원이 하는 모니터링과는 다르게, 이것은 포맷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김진각 위원 : 모니터링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사업의 개선이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적절한가? 제가 사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의 전담심의위원들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보고서를 봤는데 어떤 위원들은 상당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페이지를 작성한 반면에 어떤 위원들은 되게 부실하게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모니터링이라는 자체가, 특히 국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가 기관의 사업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면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차기 심의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일종의 레퍼런스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해 놓는 게 모니터링의 질도 담보하고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다음 연도 사업을 설계할 때, 또 심사기준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고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피드백을 꼭 해 드리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과에 대해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난 4월 초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사업비 지출한도가 10% 감액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지출한도는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같이 함께 적용 받는 실링 값이고 문예기금 사업비도 역시 적용을 받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지출한도 값으로는 3,905억 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아래의 지출한도 재배분 기초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액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10%지만 세부 사업별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가지원’이나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분야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향유지원’ 처럼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14% 감액을 했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에서도 14%를 추가 감액했습니다.

또 이것은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 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외에 ‘관광자원화’나 ‘한스타일 육성지원’, ‘공예산업진흥’, ‘문화예술 해외교류’ 처럼 타 기관으로 단순 재교부되는 사업 등은 더 이상 문예기금에 담지 않고 일반회계 내에서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산안에서는 문예기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향후 기재부 주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협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가급적 문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계기성 행사 사업과 일몰제 사업도 반영해서 추가 확보한 예산은 문예기금 사업 중에 말씀드린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등 같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업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재배분 기초를 설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2026년도 부처안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하는 예산은 5,603억 원인데 이 예산 중에 전년대비 90% 한도에 맞춘 한도 내 값이 아까 말씀드린 3,905억 원이고요. 한도 외로도 저희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반영해서 담은 규모가 1,698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향유지원’과 ‘관광기금’ 이관되어 들어온 사업 3개를 제외하면 총 요구하는 사업비는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 그리고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사업에 1,787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도 내 값과 한도 외 값은 말씀드리면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 내가 반영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도 외 값은 상대적으로 반영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설득하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지원’에서는 기존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예산은 현재의 수준으로 지키는 한편 일부 사업에 기획형 사업예산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대학로 중심의 ‘문학주간’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내용, 그리고 ‘시각예술창작산실’에 현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건축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은 대학로 소극장 대상으로 ESG차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지원 서비스인 ‘무대기술 119’ 사업을 정식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3억 원을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10년째 동결 중인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지원금도 확대하고자 했고, 해외로 국제협력관을 파견하는 내용도 담고자 했습니다.

또 문체부 내의 산하기관 간 국제교류사업 역할 조정에 따라서 국제교류 인바운드 사업의 성격을 하기로 했었고 작년에 최초로 3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요

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예술 전 장르에 걸쳐서 비평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주요 신규 증액사업으로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담았습니다.

아래 ‘예술인력육성’에서는 기존에 ‘무대예술전문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미래예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APE캠프’를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작년에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서 내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산이 되는 ‘예술인력교육플랫폼’ 같은 예산도 다시 한번 복원하고자 5억 원 한도 내에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산된 기록원의 아카이브와 예술기록물 데이터를 통합된 디지털아카이브로 개편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예산으로 15억 원을 한도 내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현황에 부족 예산에 대한 증액. 그리고 예술현장 그리고 우리 지원기관에서도 AI에 대해서 한참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도 내로 3억 원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본 사항은 이번 달 초에 예산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보았을 때 구문모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예술창작지원’을 보시면 647억 원이 올해 반영인데요. 한도 내로 639억 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10% 감액 기조인데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224억 원에서 내년도에 218억 원으로 감액 기조의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유자)’ 사업이나 ‘예술의관광자원화’ 사업은 조금 더 많은 폭의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예술의사회적가치확산의 경우에는 올해 279억 원에서 오히려 내년도에는 298억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향유지원’도 2,806억 원에서 2,413억 원으로 큰 폭의 감액을 반영해서 최대한 주요 사업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외에도 여기에 보시면 한도 외 값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매개단체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창작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고객을 함께 잇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창제작매개지원’ 사업이 ‘예술창작지원’ 사업 아래에 보시면 한도 외 값으로 5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아래에 보시면 아트마일리지라는 사업 20억 원이 한도 외 값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전에 이훈경 위원님께서 이미 기초예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람을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공예술지원체계 안에서 기업이 후원을 통해서 유입되는 방식인 것처럼 기초예술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다시 그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해서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도 외로 ‘아트마일리지’ 사업을 담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수입원 중에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출연금이라는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었는데 이 취지를 살려서 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각예술창작육성’ 사업에 한도 외로 반영되어 있는 50억 원이 있는데요. 그게 지역미술관컬렉션 공동 운영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월 달 중기사업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역별 미술작품 컬렉션을 구매하고 지역미술관에서 관리하면서 전시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설계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먼저 요청이 온 사업이기도 한데요. 아직 문체부의 시각예술과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추후에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에도 한도 외를 포함한 10억 원은 역시 1월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기초예술 전시가 될 때 그 작품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한도 외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중기사업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신규, 증액 사업에 주로 담겼고요. 지난 4월 1일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요청을 드리면 5월에 문체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5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문체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2030 비전을 보고 봤거든요. 그런데 4개의 비전 카테고리 가운데 맨 오른쪽 것이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ESG조직 등이 쪽 나오는데 아까 쪽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ESG가 나와서 “여기에 들어갔구나.” 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아마 경영평가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비전대로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것을 관찰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쪽 보셔서 어떤 게 매칭이 되는지를 보셔서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비전전략과 목표,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놓고도,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반영될 테니까 보자는 좋은 의견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각 위원 : 향유지원사업에 예술위가 관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문화누리카드나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에는 한도 외로 편성하더라도 정부정책상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희 안에서 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빼서 하더라도.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기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략적으로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전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전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1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전은 2건이었고요. 하나는 9월에 예정된 뉴서울CC 자선골프대회와 후원음악회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안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중심 예술과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떨어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2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대회와 음악회를 연계하는 것은, 골프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골프대회의 분위기 그리고 골프대회가 음악회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골프대회에 어떤 예술인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라인업을 잘 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기획사에 이것을 다 맡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예술인들을 골프대회에 참여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결국 음악회 후원으로 연결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중심 예술과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사무처에서 내린 결론이 지역문화재단이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민간 예술단체, 예술가 또는 기획사를 1대 1대 1로. 그러니까 지역과 기업 그다음에 문예기금을 1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나기는 했는데요. 시상금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획사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사의 역할이나 범위 등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사실 네이밍 자체가 지역중심의 예술과 기업을 연계시켜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상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과연 적절한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뭔가 가시적인 쪽으로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논의를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지난번 소위원회를 뉴서울CC에서 했습니다. 가서 봤는데 클럽하우스에 걸려 있는 그림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 제도를 활용하던 아니면 저희 아르코에 있는 소장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하던 작품을 정기적으로 바꿔서 좋은 작품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훈경 위원 : 자선 골프대회 및 후원음악회 관련해서인데요. 혹시라도 전 회의에 이 이야기가 분명히 얘기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 음악회가 혹시 저희가 가을에 하는 큰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문예위 기획행사라고 자꾸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염려의 소리가 있는데요. 혹시 이 행사도 그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골프대회와 음악회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예위에 과급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앞에 논의된 내용을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 오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후원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쪽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절대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보다도요. 많은 상황인데 그것은 전부 다 정부 예산에만 목을 매기 때문이에요. 98%가 정부 예산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60%가 되고 정부예산은 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후원이 보통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원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연계를 하는 것이죠. 음악회 자체도 저희가 대외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음악회라고 하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가족음악회라고 하고 수입금을 저희들이,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고요.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을 걷기 위해서 수익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매년 25억

원이 들어오다가 작년에 63억 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체계를 바꾸면서요. 그리고 거기 회원 2,000여명도 우리가 잘만 접근하면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런 기획행사를 단순하게, 목적이 없는 기획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조직 중에서도 후원 센터를 별도로 중요하게 놓고 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문예진흥기금에서 준조세 형식으로 걷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은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후원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그런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구문모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후원에 있어서 얼마전에 보도 자료를 우연히 봤어요.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1억 원 정도 후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년예술한테 쓴다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기부 받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수령할 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내일기금’ 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기부하실 때 청년 배우들, 젊은 배우들이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연기를 하려고 하니깐 천편일률적이고 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 선생님들께서도 멘토로 참여하셔서 교육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에서 그 다음 단계의 사업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후원회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걷은 것을 가지고 인바운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음악회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후원금은 ‘아르코앙상블’ 을 하는데 지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기획사업으로 끝나고 전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부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원을 통해서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인바운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 사업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확장,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은 사무처에 로드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매번 주어진 대로 하던 일만 하게 되면 과거 우리가 비판을 받던 게 하청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어떤 기획사업을 해낼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5년 5월 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그전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이훈경 위원 : 제가 회의 때 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 풀을 열고 확장해 달라고 제가 두 번 정도 회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예술 쪽은 거의 심의위원들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언제 열수가

있나요?”, “충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해 기본사업들이 끝나가니까 올해 말에 있어야 되는 것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기본계획은 저희 팀에서 이미 다 짜놓았고요.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되는 안을 보고 소위원회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심의위원 풀은 위원회 전체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 5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23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논의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회의잖아요. 그게 이번처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 종료)

제395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날짜인 2025년 4월 25일은, 제가 전담심의 참여하는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심의날짜(4.23~25)와 겹치고 있어서 2025.4.17(목) 담당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전체회의 일정으로 기 확정되어 있었으며, 심의날짜와 전체회의 날짜의 중복여부 미확인한 사무처의 불찰로 보임). 이에 2025.4.25 위원회 전체회의는 부득히 심의장소(파주 아르코인력개발원)에서 40여분간 영상회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동안 문예위 전체회의에 참여하게 됨으로 당시 추가로 서면내용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아래 의견이 속기록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의결안건) 2025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지원심의 결과보고: 회의자료 6~13쪽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위원의 해외 출장 건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었고, 추후 사무처에서 자세히 보고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생략되었습니다(추후 보고 요청). 아울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 시, 사무처 추천 및 비상임위원 추천 명단을 토대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 대하여 투명 공개를 요청했으나 미실행되었습니다.(무용분야의 경우, 매년 사무처 추천 명단에서 심의위원 결정된다는 인상)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신청건수 10건 중 4건에 달하는 행정결격 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한 사무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결격’ 다량 발생(40%)은 공모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결격’ 관련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무용분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작산실(올해의 신작)]의 경우: 1차 사무처 서류검토 단계에서 원로 무용인의 경우, 행정부적격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니 사무처에서는 “핵심 창작진 참여 동의서” 미제출을 근거로 탈락 사유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이 행정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팀마다 행정결격사유에 대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예술인 중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반대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결격 처리에 대한 사무처의 정교한 검토와 더불어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개선을 건의한 바 있음).

아울러 [창작주체(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경우, 000000의 “2025 000000000”로 이른바 캡을 씌워 신청한 6개 사업 중에 포함된 000000000는 다년간지원사업(2024~2026:8,000만원)으로 기 선정된 단체로서 중복지원(이중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하여 심사대상에 올랐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의단계 및 지원결정 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5.3.18 문예위 주최 무용분야 <현장업무보고 및 토론회>(지정패널 및 현장예술인 지적) 그리고 2025.3.28 위원회 전체회의 때 언급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본 위원은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참여 관련 논의 때, “심의-의결”이 분리될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타분야 심의결과를 의결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분리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서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심의에 참여한 본 위원은 위의 창작주체(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 심의에 참여했지만 의결에는 배제되었고, 무용분야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타 분야 위원들이 의결함으로써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심의-의결” 절차의 통합연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 (의결안건)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 회의자료 33~37쪽 관련입니다.

문예위 사무처의 보수규정 및 임원과 사무처장의 보수규정 개정사항은, 문예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2025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2025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안건 상정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전체회의 안건 제출 이전 단계에서 비상임위원에게 보수규정의 개요, 현재의 보수체계 및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최소한 설명이 있는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예위 ▲위원장의 경우, 130,059,768원 -> 133,051,142원 상향, ▲감사의 경우: 104,047,815원 -> 106,440,914원, ▲사무처장의 경우 121,654,658원 -> 124,452,715원 등으로 위원장·감사·사무처장의 연봉이 약 200~3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24년 기본연봉의 2.7% 인상율을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문예위 위원장 및 임원급 연봉인상이고 문예위 사무처 직원의 임금인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문예위 위원장과 수평적 관계인 비상임위원은 월 80만원 정도 직무수당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한때 문예위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보수책정 기준에서 볼때 지금 관점으로 보아도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예위 임원진의 보수가 타기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처와 비상임위원 모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 (의결안건)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심의에 대한 비상임위원 참여 결정의 건: 회의자료 47~50쪽 관련입니다.

인문정신문화 지원사업은 본래 문체부에서 담당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문예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자료에는 1차심의(서류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2차 심의(인터뷰 심의)는 5월 중순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임위원 11명 전원 대상 통합공모 심의위원 후보군이고 김진각, 구문모 위원은 심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류심의가 현재 진행중인데, 본 안건의 의결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될 경우 2차 심의부터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1차 심의에 이미 참여했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상임위원의 인문정신문화 지원사업의 심의 참여를 위해 오늘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후속 조치로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결 내용이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외 공모사업 지원심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전담심의제 미적용사업 전체에 대하여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너무 즉흥적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2024년 9월~12월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심의 참여 관련 4개월 동안 위원회 전체회의 및 TF회의(2회) 등을 통해 열띤 논쟁과 더불어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심의 참여 관련, 실제 심의에 참여한 3명의 위원(왕치선, 배은주, 성기숙)을 제외하고는 위원장님을 비롯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심의참여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불공정 내지 블랙리스트 작동을 의심하는 등 도를 넘는 비판을 제기하여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고 봅니다.

개인적 기억으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비판의 논거 대부분은 문예위 예술노조, 연극협회, 문화연대, 일부 언론 등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성명서 등 문제제기 과정에서 활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진통을 겪은 바 있는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심의 참여 문제가 이번 인문정신문화 지원사업 심의참여 여부 논의에서는 너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4년 전담심의제 참여 위원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공격과 비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 내지 유감의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별건의 문서까지 준비된 상황에서 전담심의

제 심의 참여를 주장하는 위원에 대하여 비판하던 상황이 선명하게 반추되는 바, 당시의 비판이 지금은 모두 해소되어 적극 참여의지를 보일 정도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인문정신문화 지원사업은 특정 위원이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비상임위원 전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주도하는 위원이 필요하다면, 인문(文·史·哲) 전공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위원들이 우선순위로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합니다.

■ (보고안건) 2025년 소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결과 보고: 회의자료 52~54쪽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2024년 10~11월 문예위 사무처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소위원회는 기(期)마다 숫자가 각기 다르고 성과면에서 애초의 기대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2024년 하반기부터 경영전략소위원회, 예술창작소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에 비춰볼 때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소위원회의 직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소위원회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매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팀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위원별 독자적 제안형식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 비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과정 없이 위원과 사무처 1:1 소통방식으로 의견수렴하는 것은 합의제 구조인 민간자율기구로서의 문예위의 성격 및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운영된 소위원회 종료시점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그간의 활동에 대한 성과 및 평가 등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없었으며 나아가 비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새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 3명의 비상임위원이 2024년 10월 전체회의에 문예위의 ‘제도개선소위원회’ 개설을 의결안건으로 제안했으나 기존 위원들의 반대로 미결되어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문예위의 경영전략 및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관, 규정, 지침 등에 대한 정교한 검토 등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정체성 및 역할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본인은 이 분야 소위원장 의사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아울러 문예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지원기구로서 위상이 뚜렷한 만큼 보다 고도화된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심의 제도개선 등을 다루는 실제적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소위원회가 1년 임기로 구성되는 만큼 지속성 담보가 가능한 위원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9기 문화예술위원회 각 소위원회의 활동이 위원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가치 창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위원회별 생산된 자료와 지표로서 설명을 요청합니다(더불어 각 소위원회 회차별 회의자료 및 포럼 개최 등 활동결과보고서 요청).

■ (보고안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안): 회의자료 72~74쪽 관련입니다.

본 건과 관련, 본 위원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사무처에 2025년 전담심의제로 추진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모니터링 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두 및 이메일로 수차례 요청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보고안건 “2025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안)”의 내용에서 추진목적, 추진대상, 평가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은 전담심의제 제도의 근본 취지(심의에서 평가 모니터링, 환류 등 연계를 통한 전문성, 책임성 강화)에 걸맞게 실효성있는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2025 문예진흥기금 전담심의 실시 이후 자체 평가회 등 요청했으나 사무처의 바쁜 일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담심의에 참여하면서 국내 최고의 예술지원기구로서 문예위의 탁월한 전문성, 업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고도화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서는 현장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자체 문예위 내부의 논의와 성찰,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5.4.10 무용분야의 2025년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모니터링 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자료미비로 연기되어 금일까지 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가 연기된 것은, 예술지원본부 지원총괄팀에서 작성한 회의자료 내용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무용 전담심의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를 사무처가 수용하여 연기된 것입니다. 지원총괄팀에서 작성한 문건에 활용된 설문조사 토대로 작성한 심의제도 개선내용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있으며, 그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2025.3.18 진행된 무용분야 <현장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무용전문인들의 다양한 지적들을 문예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당시 지원심의 방식에 있어 공정한 가치 실현을 위해 다중지원 내지 중복지원을 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습니다. 협회든 단체든, 모두 동일하게 1건 지원 원칙 그리고 문예위 지정사업을 폐지하고 전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할 것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용계의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순수예술 활성화에 문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용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모니터링·환류에 이르기까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전담심의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사무처(위원장)에서 위촉한 전담심의관의 경우, 애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중간 단계에서 심의참여하는 것은 전담심의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담심의제의 목적과 취지는 기존의 일회성 심의가 아닌 사후에 이르기까지 평가, 모니터링, 환류 등 연계 심의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특히 무용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 등 현장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무용인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보고안전) 2026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수립 경과 보고: 회의자료 75~78쪽 관련입니다.

우선, 국가의 재정상황 악화로 전 부처의 예산삭감 기조에서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사무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위 비상임위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 2026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수립이 위원들과의 협의 내지 논의절차 없이 사무처 주도로 추진되고 후속 보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직접교부가 아닌 문예위 재교부로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 무엇보다 문예위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예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타 문예위의 기관정체성 제고 및 “사무처-비상임위원”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문예위 전체회의 회의자료는 위원들의 사전검토를 위해 회의 개최 1주일 전 송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준수된 경우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그간 위원들이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과다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문예위 직원들은 서울-나주로 업무공간이 분절되어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서울 출장근무가 다수이므로 장소이동 등 근무환경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예위는 순수예술 창작활성화를 견인하는 국내 최고의 예술지원기구로서 지난 50여년간 비교적 기관

정체성에 충실해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근래 몇년 지원사업보다는 문예위 주최의 행사성 사업에 치중하면서 문예위 고유의 기관 정체성이 희석되고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과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예위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정체성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외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등 소위 ‘아웃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문예위가 예술지원기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예위 사무처는 비상임위원의 직무활동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간의 문예위 운영방식을 볼 때 사무처는 위원들과의 사전 협의 내지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문건을 작성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단지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기계적으로 의결안건 내지 보고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집니다.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실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민간자율기구로서 문예위의 역할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비상임위원-사무처”의 상호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문예위의 운영방식이 과연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가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9개월을 반추하자면, 그동안 위원장님의 위계에 의한 압박, 사무처장의 임의적 문건작성 전달, 사무처의 독단적(?) 운영방식, 사실과 다른 ‘상상과 추정’에 의한 문예위 노조 등의 도를 넘는 압박과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민간의 전문무용인들의 건전한 자율적 포럼활동[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무미생)]까지도 문예위 노조에 의해 비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무용전문인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활동마저도 문예위 노조의 비판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무용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예위는 1973년 창립 이래 지난 50여년간 순수예술 창작활성화를 견인해온 민간자율지원기구로서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적 성취를 추동하고 동방성장을 모색해 왔기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들이 참여한 TF회의마저 무단 녹취되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합니다. 녹취록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회피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예위 관련 공식회의 등 일상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노조 측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 심각한 압박(?)으로 느끼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적지 않음에 대하여, 문예위 구성원 모두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문예위의 노-사 관계에 있어 비상임위원은 온전히 사측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타 문제에 따른 대응 또는 조력 등이 사측에 걸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의 문예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상임위원이 겪는 권리침해 내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등 심층적인 검토와 더불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자율기구로 운영되는 문예위의 비상임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층심사를 거쳤고 나아가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된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의거한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권한과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사무처는 보다 충실히 보좌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비상임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 내 위원들의 직무활동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상임위원은 자체의 간담회 내지 미팅을 해야 할 경우, 주변 카페 등을 전전하는 소위 ‘유랑자’ 신세로서 정상적인 직무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들이 공유하는 업무공간 확보(컴퓨터, 프린터 등 구비)도 필요합니다. 법령과 규정에 의거할 때 비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수평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활동 보좌에서는 열악한 제반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나아가 사무처의 심각한 차별적 태도에 노정되어 있는바,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비상임위원의 직무활동을 보좌하는 전담 인력배치도 필요합니다. 법령과 규정에 의거한 비상임위원들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해서는, 문예위 사무처 직원들 중 위원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해 원활한 직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줘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무처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사무처와 비상임위원은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문예위의 위상 재정립 및 미래 가치를 창출해 가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임위원 성기숙)

